

## 민(民)의 한반도 평화협정 선언문

1950년 발발한 한국전쟁은 수백만의 생명을 희생시켰고 한반도 산천을 폐허로 만들었다. 1953년의 정전협정은 끝내 평화협정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참혹한 재앙을 불러온 대결로 남북 간 장벽이 공고해졌으며, 이로 인해 남북, 북미 간 갈등과 군사적 대결이 증폭되어 왔다.

생명을 위협하는 소모적 갈등과 군사대결을 끝내기 위한 첫걸음은 한국전쟁 종전과 평화협정 체결이다. 이는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항구적 평화로 가는 길이며 동북아와 세계의 공존과 공영에 대해서도 희망의 빛을 던져줄 것이다. 이에 대한 확신으로 한국의 시민사회는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이웃 여러 나라들에서 벌여왔고, 전 세계의 평화를 염원하는 시민들도 지지와 연대를 보내왔다. 이러한 노력은 끝나지 않은 냉전의 벽을 허물고 상생과 평화의 새 규범 위에 생명공동체의 새로운 지평을 열자는 요구이며 응답이다.

이에 우리는 **한국전쟁의 종식과 ‘민의 한반도 평화협정’을 선언한다.** 정치 군사적 이권에 연루된 이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평화를 향한 민중의 열망을 외면하기에 민이 스스로 바꾸어 내고자 하는 것이다. 전쟁 지속의 다른 이름인 ‘정전’ 체제의, 지난한 폭력과 수난의 세월을 끝내기 위해 마땅히 누려야 할 평화를 민이 선언하는 것이다. 한반도의 분단으로 이득을 취하려는 이들이 갖가지 구실로 분단의 영속화를 도모하기에, 민이 스스로 분단을 넘어 통일로 나아가려는 것이다. 이는 70년 동안 저마다 몸에 새겨진 상흔과 가슴에 고인 눈물과 대동평화 세상에 대한 갈망이 터뜨리는 함성이다.

전쟁 발발 70주년에 선언하는 민의 평화협정은 정전협정 체결 후 70주년이 되는 2023년 7월 27일 이전에 한국전쟁의 완전한 종식과 한반도와 동북아의 항구적인 평화 구축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이 될 평화협정으로 거듭나야 한다.** 관계국들은 지금 선언하는 ‘민의 평화협정’ 원칙과 내용을 반영하여 조속히 협상을 시작하기 바라며,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 평화협정의 기본원칙

1. 정전협정 서명 당사자와 교전 당사자인, 대한민국(한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 중화인민공화국(중국), 그리고 미합중국(미국)은 한국전쟁의 완전한 종식과 한반도에서 항구적이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하여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 한다.

1. 협정 당사국들은 국제연합 헌장을 준수하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관한 기존 합의들을 존중하고, 남과 북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고, 세계평화에 기여하며, 체결하는 평화협정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1. 한반도 평화협정은 남북, 북미 정상채택한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따라, 당사국 간 관계 개선과 신뢰에 바탕을 두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완전한 비핵화를 동시적·단계적으로 실현하는 과정을 포함하여 체결되어야 한다.

한반도 평화협정에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1. 평화협정의 발효와 함께 한국전쟁을 완전히 종식한다.
1. 한국과 조선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을 경계선으로 하고, 정전협정에 규정되지 않은 경계선은 양국이 합의하여 정한다.
1. 한국과 조선은 기존 비무장지대를 평화생태지대로 전환한다.
1. 당사국들 / 한국과 조선, 조선과 미국은 어떠한 경우에도 공격 위협을 가하지 않고 무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1. 조선과 미국은 국교를 정상화하고, 비방, 압박, 제재를 중단한다.
1. 당사국들은 각각 평화협정에 저촉되는 적대적 국내법을 개정하거나 폐기한다.
1. 한국과 조선은 전면적인 정치·군사적 신뢰 조성을 위해 기존의 합의를 이행하고 이를 뒷받침할 상설 고위급회담을 운영한다.
1. 한국과 조선은 상호 군비를 축소한다. 이를 위해 군사공동위원회를 운영한다.
1. 조선은 핵무기를 폐기하고 한국과 미국은 핵우산을 폐기한다. 당사국들은 한반도에서 핵무기와 핵위협이 될 일체의 군사적, 기술적 조치를 금지한다.
1. 평화협정의 발효와 함께 유엔사를 해체하고, 외국군은 단계적으로 철수한다.
1. 이 평화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한국조선 평화관리 공동위원회와 당사국조정위원회를 각각 구성하고 운영한다.
1. 당사국들은 이 평화협정의 이행을 촉진할 국제평화감시단을 구성하고 운영한다.

한반도 평화체제는 민의 참여에 기반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 선언의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0년 7월 24일

#### 제안단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Reconciliation & Reunification Committe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한국YMCA전국연맹 (National Council of YMCAs in Korea)  
 한국YWCA연합회 (National YWCA of Korea)  
 평화네트워크 (Peace Network)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Solidarity for Peace and Reunification of Korea)  
 참여연대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평화포럼 (Civil Society Organizations Network in Korea Civil Peace Forum)

#### 국내 참여 단체

가톨릭평론독자모임(서울) (Study Group on Catholic Review<Seoul>)  
 팩스크리스티코리아 (Pax Christi Korea)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 Ecumenical Youth Council in Korea(EYCK)  
 기독교민회 KIDOKYOMINHOE (KACWMM, KIYOMIN)  
 남북물류포럼 The Korea Logistics Forum

그리스도의 교육 수녀회 Sisters of the Christian Doctrine  
 평화를만드는여성회 Women Making Peace  
 전교조 고양중등지회 Korea Teacher's Union goyang  
 전교조 JeonGyoJo(Korean Teachers and Education Worker's Union)  
 고양여성민우회 Goyang WomenLink  
 민주통일평화포럼 DUPF  
 한국신연구소 Institute of Korean Feminist Integral Studies for Faith  
 사단법인하나되는길 NKBP  
 한국여성신학자협의회 Korean Association of Women Theologians  
 순천NCC Soonchun NCC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Civilian Military Watch  
 콜롬반외방선교회 Columban Mission Society  
 불평등한 한미소파 개정 국민연대 People Solidarity for Revision of Unequal KOREA-US SOFA  
 재단법인남북평화재단 SNPEACE  
 인드라마 생명공동체 Indramang life community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Korean Catholic Women's Community for New World.  
 오산이주노동자센터 OSAN MIGRENT CENTER  
 기독교대한감리회 평화통일위원회 Peace and Reunification Committee, The Korean Methodist Church(KMC)  
 감리교여성지도력개발원 Korean Methodist Women Leadership Institute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평화통일위원회 Peace and Reunification Committee,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Republic of Korea(PROK)  
 한국기독교장로회 전국여교역자회 Women Ministers' Association Of PROK  
 한국기독교장로회 청년회전국연합회 The National Youth Association of PROK  
 대한성공회 통일선교위원회 Reunification Committee, Anglican Church of Korea(ACK)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Justice and Peace Priests' Association, ACK  
 평화공공성센터 Center for Peace and Public Integrity (CPPI, Hanshin University, Korea)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The Korean Council for Justice and Remembrance for the Issues of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Committee on Reunificati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Research Committee on USFK Affairs

### **세계 종교/사회 지지 단체**

세계교회협의회 국제문제위원회 Commission of the Churches on International Affairs, World Council of Churches (WCC)  
 세계개혁교회커뮤니온 World Communion of Reformed Churches  
 아시아태평양 세계기독교학생연맹 World Student Christian Federation (WSCF) Asia-Pacific

아시아태평양YMCA연맹 Asia-Pacific Alliance of YMCAs  
필리핀교회협의회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the Philippines (NCCP)  
대만장로교회 Presbyterian Church in Taiwan (PCT)  
일본그리스도교협의회 The National Christian Council in Japan (NCCJ)  
일본교단 The United Church of Christ in Japan (UCCJ)  
재일대한기독교회 Korean Christian Church in Japan (KCCJ)  
호주연합교회 The Uniting Church in Australia  
미국그리스도교협의회 National Council of the Churches of Christ in the USA (NCCCUSA)  
미국연합감리교회 세계선교부 General Board of Global Ministries - The United Methodist Church (UMC)  
미국연합감리교회 교회와 사회부 General Board of Church and Society - The United Methodist Church  
미국 제자교회/연합교회의 세계선교회 Global Ministries of the Christian Church (Disciples of Christ) and United Church of Christ  
미국친구회 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  
유엔NGO협의체 Conference of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in Consultative Status with the United Nations (CONGO)  
위민크로스디엠지 Women Cross DMZ  
캐나다연합교회 United Church of Canada (UCC)  
독일개신교연맹 Bishop Petra Bosse-Huber, Rev. Ostarek Claudia/ Protestant Church in Germany (EKD)  
헤센나사우주교회의 Protestant Church in Hesse und Nassau (EKHN)  
독일복음선교연대 Evangelical Mission in Solidarity (EMS)  
독일동아시아선교회 German East Asia Mission (DOAM)  
미션21 Mission 21

#### **지지를 심의 중인 단체**

요이치 노구치 선생(니와노 평화재단)  
스티브 피어스 선생 (영국감리교회)  
데이빗 그로쉬 밀러 목사(영국개혁교회)  
미엔다 올리알테 목사(미국장로교회)  
빅터 슈 선생 (대만장로교회)-지지 승인/ 빅터 슈는 개인